

1993. 11.

光州直轄市西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審查報告書

都市建設委員會

光州直轄市西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3年 11月 日

都市建設委員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3年 10月 12日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3年 10月 15日

라. 上程日字 : 第26會 西區議會(臨時會) 閉會中

—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3年 11月 2日) 上程

—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3年 11月 2日) 質疑. 討論

—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3年 11月 2日) 原案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理由

○ 도시계획법 제10조(권한의 위임)에 의한 건설부장관 권한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 구 도시계획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한다는 사유임

나. 主要骨子

- 본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소속직원과 구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趙澤龍)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시장에게 위임되었던 20M미만도로외 37개 업무가 입안및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동업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동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 없음

5. 討論要旨 : 없음

6. 修正案 要旨

- 제4조 제1항 『통리』를 『총괄』로 제6조의 2 제3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審査結果 : 수정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광주직할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광주직할시지방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구의회의원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이 발생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의 2 (도시계획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에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 7 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 9 조 (회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 10 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광주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여비 : 광주직할시서구여비조례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액

제 12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부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u> ----- -----</p>
<p>제6조의 2 (도시계획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도국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에서 호선한다.</p>	<p>제6조의 2 (도시계획소위원회) ③ ----- ----- <u>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u> <u>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